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4. 2 선고 2019가단1134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0. 3. 12.

판 결 선 고 2020. 4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D, E, F에게 각 13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20.부터 2019. 6. 2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망 G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은 2019. 1. 4. 사망하였는데,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 A와 선정자 D, E, F 및 피고가 있었다.

나. 망인은 경북 고령군 H 대 699㎡와 그 지상의 주택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는 2019. 11. 2. 망인을 대리하여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,000,000원(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,000,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130,000,000원이다)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달 9.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피고는 망인의 농협계좌(갑 제6호증)로 2018. 11. 20.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,000,000원을 입금받았는데, 그 중 80,000,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 130,000,000원은 망인의 소유이고,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80,000,000원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,000,000원(= 130,000,000원/5)을 공제한 나머지 54,000,000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먼저,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 및 매매대금을 분배할 권한을 수여받은 후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수령한 매매대금

130,000,000원을 원고와 선정자들의 몫 50,000,000원과 피고의 몫 80,000,000원으로 분배하였던 것이므로, 위 80,000,000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,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1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망인이 2018. 11. 5.경(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다)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(을 제2호증), 매매대금을 분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. 오히려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인은 피고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의논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, 그러나 피고는 사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망인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130,000,000원을 입금받았는데, 이후 망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.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,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분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 다음으로, 피고가 반환해야 할 위 가.항의 54,000,000원에서 ① 2017. 8. 이후 피고가 망인의 부양비로 지출한 5,000,000원, ② 망인 사망 당시 선정자 F에게 장례비용으로 지급한 2,000,000원, ③ 망인 내외의 봉분 조성 및 상석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4,000,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피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,000,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망인과 피고가 부자지간이고 피고가 망인을 지극히 봉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출내역이 증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,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각 지출비용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13,500,000원(= 54,000,000원/4) 및 이에 대하여 위

매매대금 130,000,000원의 최종 수령일인 2018. 11. 20.1) 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. 6. 21.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송인권

선 정 자 명 단

1. A
2. D
3. E
4. F. 끝.

1)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

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,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때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는 그 날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